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142호

2020. 10. 21.

건 명	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	통 이용지원에 관한	·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# 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「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, 국가유공 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O 정대중교통 할인율(안 제4조 별표)
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의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
 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는 내용을 삭제

## 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2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143호

2020. 10. 21.

건 명	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# 보 고 내 용

# □ 제안이유

○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보조금지급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.

## □ 주요내용

○ 재정지원(안 제3조)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

O 외부회계감사 (안 제6조)

매년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 회계감사 실시 및 지속적인 지도·점검

#### 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